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8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 권칠승·김준혁·조인철

이기헌 · 송옥주 · 박 정

윤종군・강득구・이성윤

전용기 · 임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과목별로 난이도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있고, 일부 과목은 다른 자격증의 시험 과목과 중복되기도 함. 따라서, 일부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어 선택과목 폐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선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정상적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제9조(시험과목) ①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	<u><삭 제></u>		
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			
<u>개 과목</u>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u><삭 제></u>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④ <u>제3항에</u>		
<u>신설ㆍ폐지하거나, 제3항에</u> 따			
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			
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			
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